

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인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에 의거 폐지되므로 노인 복지기금 운용심의를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개정이 필요함.

2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
-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 부칙

3. 주요골자

- 기금의 운용관리 심의위원회를 변경(안 제7조)
 - 기존 :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
 - 변경 :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

4. 검토보고

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

-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”가 2005. 7. 31부로 폐지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에 관한 심의와 운용 등 제반사항을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, 결정토록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변경조정하고
- 위원회변경에 따른 기능폐지와 관련 조문 등을 정비 보완함으로써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금운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보다 전향적이고 활성화 된 시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확대 등 사회복지 시스템구축에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됨
- 특히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」 부칙에 사하구 복지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

위 조례 일부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